

자주 묻는 질의 응답

1. 이 소송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소송건은 뉴욕시 교육청(DOE)이 공정 심의 명령을 제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효과적인 정책과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충실히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뉴욕시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뉴욕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률 소송입니다. DOE는 원고측의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소송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DOE의 과실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공지문 수령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정 심의를 요청하여 2000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1월 31일 사이에 공정 심의관의 명령이나 기록된 합의 약정을 받으신 분들께 공지문이 발송되었습니다.

3. 외국어로 번역된 보상 청구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보상 청구서는 영어 외에 우르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아이티어, 벵갈어, 중국어, 한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보상 청구서 외국어 번역본이 필요하시면 보상 청구 처리 담당(Claims Administrator), 1-800-918-8061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4. 보상 청구서를 신청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보상 청구서는 영어, 우르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아이티어, 벵갈어, 한국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공정 심의 명령서는 어디로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보상 청구 처리 담당, 전화 1-800-918-8061 번으로 2008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정 심의 명령서를 요청하면 이를 보내드립니다.

6. 본인의 보상 청구 적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 청구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00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1월 31일 사이에 DOE를 상대로, 공정 심의관으로부터 유리한 명령이나, 공정 심의회 심의록에 제출된 DOE와의 합의 약정을 받았으며

- 명령이나 합의가 제때에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음.

아직 본인의 적격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동 권익 옹호 협회(Advocates for Children), 전화 212-947-9779 교환 577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7. 여러 건의 공정 심의 명령을 받은 경우 보상 청구서를 하나 이상 제출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명령별로 별도의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한 건 이상의 명령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매 학사년도에 한 학생당 한 건의 명령에 한해 보상 받습니다.

8. 본인이 받은 심의 명령이 결국은 이행되었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에 따라 일부라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명령이 이행되었더라도 그 명령이 제때 이행되지 않았다면 합의에 따른 보상 청구 자격이 부여됩니다. DOE 에게 보상 지급을 제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명령을 귀하께서 받았으나 그 부분의 명령이 제때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명령 이행 지연으로 인해 귀하께서 지불한 교육비를 환급받거나 보상적 교육 서비스용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만약 DOE 가 그러한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60 일 이내에 명령이 이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명령 이행 지연으로 인해 학생이 최소 한도 이상의 피해를 입었음을 귀하께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하께는 최대 \$2,000 에 상당하는 바우처 수령 자격이 부여될 뿐입니다.

9. 본인이 받은 명령의 일부는 제때 충실히 이행되었으나 나머지 일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에 따라 일부라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단지 명령의 일부만 제때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따른 보상 청구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귀하께서 받은 명령이 DOE 에게 보상 지급과 용역 제공을 지시한 것이었고 DOE 가 보상 지급은 이행했으나 용역 제공을 불이행한 경우, 용역 제공 불이행 때문에 귀하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거나 보상적 교육 서비스 또는 학습 지원 기술 장비용 바우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정 심의 명령에 따른 교육 서비스 바우처, 교육 서비스 비용 환급 및/또는 기타 지급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상 청구서와 제반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2008년 6월 30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상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보상적 교육 서비스 또는 학습 지원 기술 장비용 바우처만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상 청구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DOE에게 명한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보상 청구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외 모든 경우에는 보상 청구서 제출 안내서(Claim Filing Instructions)의 2페이지 지시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12.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됩니까?

적격 보상 청구자는 각 청구자의 상황에 따라 보상 받으므로 어떤 특정 금액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DOE가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급금, DOE가 제때 충실히 공정 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귀하께 발생한 비용 환급금 또는 최대 \$8,000(특별한 경우 \$15,000)까지의 교육 서비스 및 학습 지원 기술 장비용 바우처가 합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 유형입니다.

13. 보상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 내용대로 자동적으로 보상받게 됩니까?

아닙니다. DOE는 귀하의 보상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귀하께서 받은 명령이 제때 충실히 이행되었거나 설사 명령이 제때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더라도 해당 학생이 이로 인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극히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음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DOE는 반드시 귀하의 보상 청구서에 찍힌 우체국 소인 날짜부터 35일 이내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서 사본을 귀하 및 귀하의 보상 청구서에 명시된 변호인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의 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 후 독립 감사가 DOE가 제때 충실히 명령을 이행했는지 아니면 해당 학생의 피해가 경미한지를 입증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독립 감사가 반드시 보상 청구서를 검토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14. 바우처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DOE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지급금 지급 이외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공정 심의 명령을 귀하께서 받았으나 DOE가 그러한 명령을 제때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합의에 따라 교육 서비스 또는 학습 지원 기술 장비용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바우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됩니다?

바우처 기준 금액은 \$8,000 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금액이 이보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60 일간의 학사 일정 동안 45 일 이상 학교에 출석하지 못했거나 총체적으로 부실한 학습 환경에 있었고 DOE가 그러한 상황이 DOE가 제때, 충실히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15,000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DOE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든지 귀하의 바우처에 이의를 제기하면 바우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약 DOE가 학생이 입은 피해가 최소한이었음을 입증할 경우, 바우처 금액은 \$0 부터 \$2,000 까지입니다.
- 만약 DOE가 명령에 따른 관련 서비스(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중 하나만 이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경우, 바우처 금액은 \$4,000 이 될 것입니다.
- 만약 DOE가 명령에 따른 하계 서비스 보상 프로그램 참가 초청서를 해당 학생에게 보냈음을 귀하께 입증한 반면, 귀하께서 이 초청장을 받지 못했거나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바우처 금액은 \$4,000 이 될 것입니다.
- 해당 학생이 2008년 1월 31 일이나 그 이전에 지역 또는 리젠트 고교 졸업장을 받은 경우, 바우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귀하께 발생한 비용 환급이나 명령에 따라 지급되어야 했으나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합의에 따라 제공된 바우처를 어느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합의에 따라 제공된 바우처 사용에 동의한 예비 서비스 제공자 명단은 합의에 관한 웹사이트인 www.hearingordersettlement.com 을 참조하거나 아동 권익 옹호 협회, 전화 212-947-9779 교환 577 번으로 요청하십시오. 이 명단은 수시로 갱신됩니다. 이 명단에 없는 교육 서비스 제공자 시설에서 바우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독립 감사에게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요청서는 독립 감사에게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LV et al v. NYC Dept of Education,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000 #6495,
Merrick, NY 11566-9000.

17. 바우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됩니까?

사전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가 보상 청구 처리 담당을 통해 DOE 로 비용을 청구 하면 청구일부터 45 일 이내에 결제됩니다.

18. 보상 지급금 및/또는 바우처는 언제 받게 됩니까?

2008년 4월 10일, 법원에서 합의안 공정성 심의회를 열어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더라도 항소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항소가 이루어지면 해결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불확실합니다. 제시된 합의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결정되면, DOE 가 보상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바우처와 지급금이 보상 청구서와 모든 증빙 서류 접수일부터 60 일 이내 또는 합의안 발효일부터 60 일 후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DOE 가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보상 청구서의 우체국 소인 날짜부터 35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보상 청구에 대한 DOE 의 이의 제기에 대해 60 일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독립 감사가 DOE 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지급금이나 바우처 수령 적격자로 결정할 경우, 독립 감사 결정일부터 45 일 이내에 바우처나 지급금을 수령 하게 될 것입니다.

19. 어떤 방식으로 지급금이나 바우처를 받게 됩니까?

합의안이 승인되면 합의안에 따른 지급금이나 바우처 수령 적격자에게 수표나 바우처가 우편 발송됩니다. 만약 명령에 의해 지급금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귀하께서 지급 이행을 요청했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20. 보상 청구서는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보상 청구서는 반드시 기타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2008년 6월 30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21. 보상 청구서를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까?

공정성 심의회에서 귀하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을 경우,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보상 청구서는 귀하께서 기타 증빙 서류와 함께 직접 제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나 기타 승인된 대리인이 보상 청구서 및 청구에 필요한 기타 증빙 서류와 함께 권한 위임 증빙을 제출하면 귀하를 대리하여 보상 청구서에 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2. 독립 감사 역할은 누가 담당합니까?

양측이 독립 감사의 역할을 맡을 두 개인(단체)을 선정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되면, 독립 감사 명단이 www.hearingordersettlement.com 에 게재되며 아동 권익 옹호 협회, 전화 212-947-9779 교환 577 번으로 문의하셔도 이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23. 이러한 합의가 향후 심의 명령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독립 감사는 DOE 의 공정 심의 명령 이행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만약 DOE 가 제때 충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처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도 소용이 없을 경우, 집단 소송 고문 변호사(Class Counsel)가 법원에 DOE 가 합의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결하여 보상 명령을 내리도록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4. 2008 년 2 월 1 일이나 그 이후에 공정 심의 명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합의에 따른 바우처나 지급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귀하께서 받은 명령이 제때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재판을 통해 개별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모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독립 감사가 귀하께서 받은 명령을 DOE 가 제때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내리면, 불이행 공지서가 귀하께 발송되고 이를 귀하의 명령 이행 소송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 보상 청구 처리 담당이 내 보상 청구서를 접수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상 청구 처리 담당이 보상 청구서 수령 30일 이내에 접수 확인 우편 엽서를 보낼 것입니다. 이 확인 엽서를 받지 못할 경우 이메일 questions@hearingordersettlement.com이나 수신자 부담 지원 전화로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문의하십시오.

26. 추가적 문의 사항이 있거나 보상 청구서 작성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합니까?

상세 안내나 청구서 작성 시 도움이 필요하면 아동 권익 옹호 협회, 전화 212-947-9779 교환 577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27. 보상 청구서 제출 후에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상 청구서 제출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 LV et al v. NYC Dept of Education,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000 #6495, Merrick, NY 11566-9000 으로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새 주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8.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법원 승인은 언제 어디서 결정됩니까?

2008년 4월 10일 오전 10시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Daniel Patrick Moynihan United States Courthouse, 500 Pearl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7, 14A 법정에서 합의안 공정성 심의회가 열립니다. 이 심의회에서 법원은 제시된 합의안의 공정성, 합리성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심의회가 끝난 후 법원에서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심의회에 참석해도 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9.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합의안에 반대하시면 합의에 관한 공지문 5 페이지에 기재된 주소로 서면 거부서를 제출하십시오. 심의회에서 발언하고자 하시면 법원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승인 요청 절차는 합의에 관한 공지문 6 페이지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승인 요청서는 반드시 2008년 3월 21일 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30. 보상 청구 처리 담당은 누구입니까?

보상 청구 처리 기관은 Garden City Group 입니다.

31. 본 합의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합의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합의에 관한 공지문에 동봉된 서식에 "탈퇴"를 희망하거나 바우처, 비용 환급 또는 지급금 수령을 원치 않음을 표시하여 제출하십시오. 탈퇴할 경우 2008년 1월 31일이나 그 이전 날짜로 내려진 공정 심의 명령 또는 명령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법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 보상 적격 당사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우처나 교육비 지급금 수령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했다라면 받을 수 있는 어떤 바우처나 지급금도 일체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절대 이 건에서의 법적 쟁점에 대해 DOE 를 상대로 법률 소송을 시작할 수 없고 소송을 계속할 수 없으며 그외 다른 법률 소송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상 청구서나 합의 탈퇴 신청서를 2008 년 6 월 30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3. 소송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로 문의해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www.hearingordersettlement.com 을 참조하거나 아동 권익 협회, 전화 212-947-9779 교환 577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합의에 관한 공지문이나 법적 소송에 관한 문의는 법원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34. 합의에 관한 공지문 및/또는 보상 청구서 사본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www.hearingordersettlement.com 에서 합의 공지문과 보상 청구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처리 담당, 전화 1-800-918-8061 번으로 요청하셔도 됩니다.